

# 第244回國會 (臨時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8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12月23日(火)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審査된案件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1

(21시14분 개의)

○위원장 **목요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정치개혁특위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위원장 **목요상**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장내소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같음합니다.

(장내소란)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병석 **위원** 산회 선포하세요.

○위원장 **목요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1분 산회)

### 【제안설명서】

####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위원회안)

政治改革特別委員會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경재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4회 국회(임시회) 제13차 본회의(2002. 11. 7)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3. 9. 26)에서 선거법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6차례의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발의 법률안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및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안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도록 1인 2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며,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 연설회를 폐지하여 고비용선거 구조를 타파하고,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거일 전 90일부터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30인 이내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도록 하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자가 구성원의 2분의 1에 상당하도록 하고, 둘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을 17일에서 14일로 단축하며, 셋째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여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넷째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며, 다섯째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여섯째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확대하며, 일곱째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선거구의 인구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기준금액을 더한 금액이 되도록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여덟째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하여 보전하도록 하며, 아홉째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며 1회 30만 원 이상 지출은 수표·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현금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열 번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선 후 1년 이내에 당적을 이탈한 경우 퇴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설명 드린 취지를 감안하시어 이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出席委員(18人)

강 봉 균	金 聖 順	金 容 鈞	김 택 기
金 學 元	목 요 상	朴 柱 宣	신 기 남
심 규 철	李 敬 在	이 규 택	李 方 鎬
이 병 석	全 甲 吉	전 재 희	정 의 화
천 정 배	黃 昌 柱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수 석 전 문 위 원	李 昌 熙
전 문 위 원	安 秉 玉
입 법 심 의 관	李 秉 吉